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창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0
----------	-----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25일  
발 의 자 : 우창윤, 박마루 의원(2명)  
찬 성 자 : 오봉수, 남재경, 김기대,  
유찬중, 유 용, 남창진,  
장인홍, 유 청, 신언근,  
문종철, 오승록 의원(11명)

##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서울 특별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함.

## 2. 주요골자

- 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항)
- 나.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다. 서울시장은 자격을 갖춘 발달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라. 서울시장은 위 (다)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 마. 서울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바. 서울시장은 위 (마)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 다. 기 타 :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중증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중에서 고도비만, 중복장애, 문제행동을 하는 등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하 “평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8.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및 단체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중에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장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제8조(평생교육기관의 운영)**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교육감 또는 자치구청장이 자치구별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평생교육센터 지정)**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8조에 의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평생교육센터 지원)**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5.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

7.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평생교육센터 예산 및 결산

3.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

4. 평생교육센터 입학대상 발달장애인 선정 및 퇴교조치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6. 평생교육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과 배치 및 근무환경 개선

7. 그 밖에 평생교육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도감독)**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교육감 또는 자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4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제14조(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 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 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 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그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센터 업무위탁)**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장 보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1월 21일 이전 공포할 경우)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제8조(평생교육기관의 운영), 제10조(평생교육센터 지원), 제11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지원센터 설치) 제15조(지원센터의 지원)등의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동 조례개정으로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 서울시의 기 추진 사업 관련 조항과 기준 및 절차가 하위법령에 아직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곤란한 조항은 추계대상에서 제외
  - 조례안 제3조 1,2항은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기 추진 사업현황 [붙임1]참고)
  - 조례안 제14조(지원센터 설치), 제15조(지원센터의 지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항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아직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추계 대상에서 제외

### 2. 비용추계의 전제

- 전제
  - 2016년부터 비용 발생 할 것으로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출 계속 발생
  - 평생교육센터 비용요소 중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미반영
  - 운영위원회는 연 4회 개최 가정하며, 운영위원회 비용 추계는 물가상승률 미반영

###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5,286,639천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구분	-	-	-	-	-	-	-
	소계(a)	-	-	-	-	-	-
세입	평생교육센터 운영 (제3조 제3·4·5항 제8조, 제10조, 제11조)	1,000,000	1,023,437	1,047,512	1,072,243	1,097,647	5,240,839
	운영위원회 운영(제12조)	9,160	9,160	9,160	9,160	9,160	45,800
	소계(b)	1,009,160	1,032,597	1,056,672	1,081,403	1,106,807	5,286,639
총비용(b-a)		1,009,160	1,032,597	1,056,672	1,081,403	1,106,807	5,286,639

자료 : 장애인 복지과 자료 재구성

### 4. 덧붙이는 의견: 없음

### 5.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임준혁 예산분석관(02-3705-1282)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 대상

-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비용(조례안 3조 제3·4·5항, 제8조, 제10조, 제11조)
- 운영위원회 운영비용(제12조)

#### ○ 방법

- 서울시 주관부서 사업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 추계기간 중 매년 비용 증가분은 최근 3년간 상승률('13년~'15년)의 산술평균값 적용  
(운영비 2.3%, 인건비 상승률 2.8%)

## 2. 추계상세

### ○ 추계과정 및 전제

- 2016년부터 비용 발생 할 것으로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출 계속 발생
- 평생교육센터 비용요소 중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미반영
- 운영위원회는 연 4회 개최 가정하며, 운영위원회 비용 추계는 물가상승률 미반영

### ○ 비용요소

-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운영위원회 운영 : 위원회수당, 운영경비 등

### ○ 비용의 추계

#### 가. 평생교육센터 운영

- 총비용 =  $\sum_{i=1}^5 (\text{연간비용})_i = 5,240,839\text{천원}$

- 연간비용(500,000천원) = [(1개소당 연간 인건비(353,118천원) + 1개소당 연간 운영비(79,622천원) + 1개소당 연간 사업비(67,260천원)] × 센터수(2개소)

※ 연간비용은 2년차부터 최근 3년간 인건비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 1개소 연간 인건비(353,118천원) = 급여(314,448천원) + 4대 보험료(21,044천원) + 퇴직적립금(17,586천원)

※ 센터장(사무국장) 2급5호봉, 팀장2명 4급3호봉, 사회복지사 3명 5급 5호봉, 사무원 1명 및 조리사1명 6급1호봉, 보조교사 6명

· 1개소 연간 운영비(79,622천원) = 여비(1,800천원) + 수용비 및 수수료(12,000천원) + 공공요금(63,600천원) + 제세공과금(2,222천원)

· 1개소 연간 사업비(67,260천원) = 사회심리 재활사업(63,400천원) + 기획사업비(3,860천원)

※ 사회심리 재활사업은 11개 프로그램, 기획사업비는 직원교육용

· 센터수 = 2개소

나. 운영위원회

- 총비용 =  $\sum_{i=1}^5 (\text{연간비용})_i = 45,800\text{천원}$

- 연간비용(9,160천원) = 위원회 수당(6,600천원) + 운영경비(2,560천원)

· 위원회 수당(6,600천원) = 1인(150천원) × 11명 × 4회

· 운영경비(2,560천원) = 1인(40천원) × 16명 × 4회

※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회는 기 편성된 16명중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을 제외한 11명이 분기 1회씩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

[ 불 임 1 ] 조례안 제3조 제1·2항 관련 서울시 기 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규정	관련 사업명	2015년 예산	비 고
합 계		9,759,910	
제3조 제1항 관련사업	어린이병원 삼성 발달센터 건립	8,480,000	· 17년까지 건립완공 예정중인 공사로써 건립 후 어린이 발달장애인의 검사, 치료지원
제3조 제2항 관련사업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사업	1,279,910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1,421,809천원(×426,542천원) - 돌보미 수당 : 396가정 × 480시간 × 6,300원 = 1,197,504천원 = 1,197,425천원(×359,227천원) - 휴식지원프로그램 : 160가정 × 200천원 = 32,000천원 = 32,000천원(×9,609천원) - 사업기관 교육비 : 1개소 × 14,500천원 = 14,500천원(×4,350천원) - 사업관리비 : 1개소 × 70,000천원 = 70,000천원(×21,000천원) - 돌보미 교통비 및 상해보험료 : 1식 × 107,854천원 = 107,854천원(×32,356천원)

주 :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사업예산은 '07년부터 진행된 계속사업임(국비 30%, 시비 70% 매칭사업)

자료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조례 개정 전 2015년 기 편성된 설치비 예산은 제외(2015년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336,000천원)